

충청북도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4.2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16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시설사용 및 전문기능인교육 수강을 신청한 후 사용
· 수강을 포기할 경우,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

4. 주요골자

-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납부고지서로 납부
(안 제6조)
-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항 신설 (안 제7조)
 - 여성회관의 귀책사유시 전액반환,
 - 사용·수강일 15일이전 신고시 전액반환, 7일이전 신고시 10% 공제후
잔액반환, 7일이내 신고시 20% 공제후 잔액반환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
하다고 사료되나

안 제6조의 수입증지 납부와 납부고지서 납부와의 장단점 비교검토와
안 제7조의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
설명이 필요함